

1. 개정이유

신종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 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 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 방탈출 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료·준분열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 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다. 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라.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 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난 안전성을 강화함.
-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이 등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13. ~ 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

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제1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에 설치된 영업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

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다수의 만화책 등 서적을 구비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등록한 영업 또는 도서관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단, 도서관 대여·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 신청서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콜라텍업”을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1) 본문 중 “긴 변”을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및 세로 길이 중 가장 긴”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긴 변”을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및 세로 길이 중 가장 긴”으로 하며, 같은 란 나) 단서 중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중 “100센티미터”를 “10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로,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한다.

- (1)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
- (2)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의 수	
	④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⑤ 신고구분 [] 신규 [] 변경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불연화 및 통로·창문	⑧ 사용재료	설치면적	
	⑨ 영업장 내부통로 cm	⑩ 창문크기 가로 cm × 세로 cm	
⑪ 위치도 (약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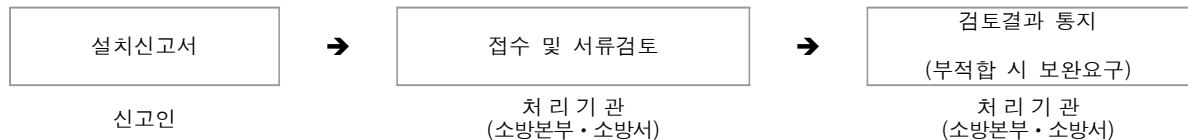
1.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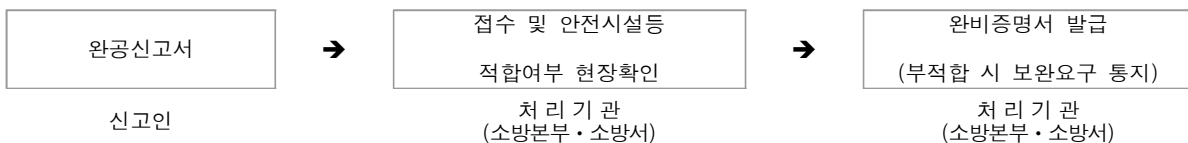
- ①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②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③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영업장 내에 설치된 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
- ④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 ⑤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 표시를 하십시오.
- ⑥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십시오.
- ⑦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의 상호(명칭)를 적으십시오.
- ⑧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합판·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⑨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 ⑩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 ⑪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처리절차

1. 설치신고 처리절차



2. 완공신고 처리절차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영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청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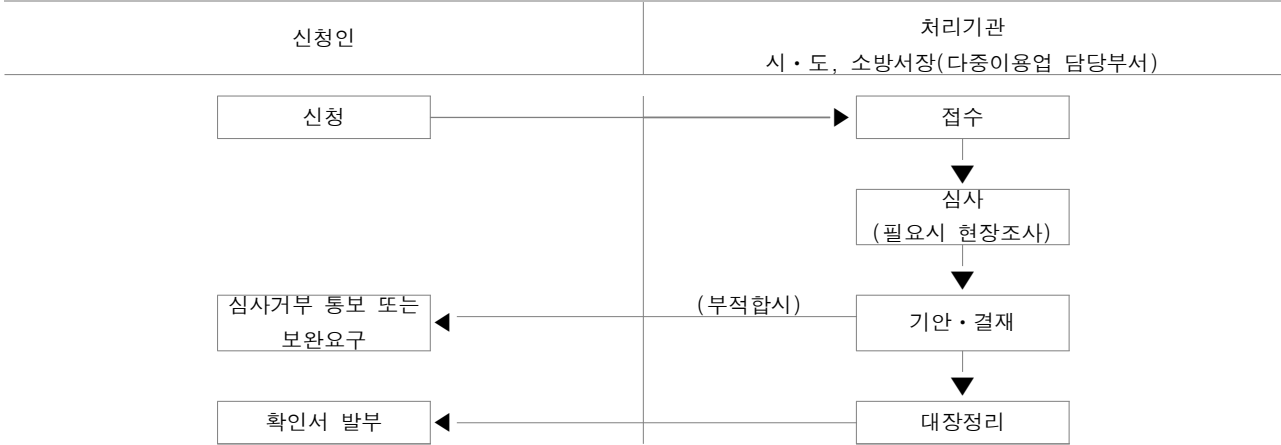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개인인 경우) 2. 사업계획서, 영업장의 평면도(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구획된 실, 복도 등 기타 세부용도 표시) 3. 기타 허가관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서 등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각호와 유사한 영업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 중 이 용 업 소 대 상 확 인 서

제 20 - 호

영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성명

영업장 주소

위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부, 소방서)장 직인

공 지 사 항

1.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서는 해당 영업장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 해당 영업장을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다중이용업소 해당 확인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유지됩니다.
3. 확인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서는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신고인 ~ 위치도 등 (생략)		
첨 부 서 류	1.~4. (생략)	수 수 료 없음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신고인 ~ 위치도 등 (생략)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4. (생략)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업을 말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 태의 영업
<u><신 설></u>		5. 키즈카페업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 한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신 설>

<신 설>

법 시행령 별표2의 제13호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에 설치된 영업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
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
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
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다수의 만화책
등 서적을 구비하고,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
로 등록한 영업 또는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
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
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단,
도서를 대여·판매하는 것이
주 된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
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지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 신청서
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
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
1호 서식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
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
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

1. ~ 4. (생략)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u>콜라텍업</u>만 해당한다) 1부 ② ~ ⑤ (생략)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3.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5015년 1월 1일	<u>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1. 제11조의3에-----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생략)	1. 소방시설	(생략)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u>긴 변</u>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u>긴 변</u>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생략) 3) 비상구 구조 가) (생략)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u>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및 세로 길이 중 가장 긴</u>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u>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및 세로 길이 중 가장 긴</u>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생략) 3) 비상구 구조 가) (생략)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

	만, <u>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u> <u>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u> <u>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u> <u>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u> <u>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u> <u>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u> <u>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u> <u>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만, <u>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u> <u>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u> <u>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u> <u>을 수 있다.</u> (1) <u>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u> <u>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u> <u>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u> <u>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u> <u>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u> (2) <u>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u> <u>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u> <u>규칙」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른</u> <u>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u> <u>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u> <u>(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이</u> <u>「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u> <u>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u> <u>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u> <u>다.)</u>
	나. (생략)		나. (생략)
	다. <u>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u> <u>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u> <u>기준</u> 1) <u>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u> <u>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u> <u>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u> <u>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u> <u>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u> <u>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u> <u>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u> <u>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u> <u>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u> <u>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u>		다. <u>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u> <u>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u> <u>기준</u> 1) <u>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u> <u>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u> <u>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u> <u>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난</u> <u>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u> <u>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u> <u>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u> <u>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u> <u>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u> <u>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u> <u>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u> <u>기구를 설치할 것</u>